

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 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안내

■ 인지세 안내

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.
인지세는 계약일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오니, 이 점 반드시 양지하시길 바랍니다.

**정부수입인지는 아파트 등기 시,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로
구입하신 수입인지를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**

※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 : **15만원**(1억원 이상 ~ 10억원 이하)

■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 * (관련법령)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, 제1항 제1호 및 제8조

- ◎ 과세대상 :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- ◎ 납부기한 및 방법 : **분양계약 시 “계약체결일” / 전매 시 “명의변경 승인일”**
(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첨부)

■ 전자수입인지 구입처

- ◎ 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, 우체국,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

※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을 방문하시면 더욱 간편하게 전자수입인지 구매가 가능합니다.

■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방법 안내

① 해당 홈페이지 접속 - 전자수입인지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검색창 “전자수입인지”검색

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

④ 구매 - 납부정보 입력

- ① 용도 : 인지세 납부
- ② 과세문서 종류 : 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- ③ 금액 : 150,000원
- ④ 건수 : 1건
- ⑤ 확인 및 결제



③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⑤ 출력

※ 전자수입인지는 **1회에 한하여 출력**되므로
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신 후 출력하시기
바랍니다.(재발행 불가)

